

# 헌법재판소공보

제319호

2023년 5월 20일(토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 목 차 —

### 헌법재판소장 연설문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 828

### 법 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29호) ..... 830

### 인 사

..... 835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 837

심판사건통계표 ..... 839

등록도서현황 ..... 841

주요신착도서 ..... 841

- 2023년도 4월 구입도서 ..... 841

- 2023년도 4월 교환도서 ..... 844

- 2023년도 4월 수증도서 ..... 844

헌법재판소장 동정 ..... 846

전자제출 안내 ..... 8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 03060 대표전화 (02)708-3456 <https://www.ccourt.go.kr>

◆ 소리로 읽는 공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우측 상단).

## 헌법재판소장 연설문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되새기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행 헌법과 함께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정의와 이성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법의 지배가 확고히 뿌리 내릴 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토대, 즉 모든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우리 헌법 제10조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원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진취적으로 구현할 때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회의 양극화 현상 역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와 전환의 시기가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과정 및 입법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사의 총체적 표현이자, 우리 국민들의 가치지향이 담긴 헌법에는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지혜가 녹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이를 연구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서른다섯 살이 되는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재판, 그리고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위한 법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5.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 법 률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납입 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출자금”을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장 및 이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제7호·제8호”를 “제3호”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을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



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으로 한다.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2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1항제8호·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회원이나”를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를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동연설회”를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

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

을 제공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전 업무”를 “외국환 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어음할인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54조제4항 중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을 “제53조까지를”로 한다.
- 제55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 제56조제3항 중 “납입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을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로,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로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 및 제11호”를 “제9호·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을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74조제4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을 “관련 임직원”으로, “하게 할”을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 직무정지”를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제79조제7항 전단 중 “금고에 대한 조치”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제1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제67조제4항”을 각각 “제6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로,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 중 “제67조제7항”을 “제67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 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제56조제7항)

-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과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제20조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제21조제1항)

-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제2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사. 사업 범위 확대(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아.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 신설(제67조제3항 신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준용함.

## 인 사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 2023. 4. 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 정 미



(2023. 4. 17. ~ 2029. 4. 16.)

### ○ 신규채용

- 2023. 5. 1.

장 재 원

임 헌법연구관보

윤 수 민

임 사서서기보(일반임기제)

명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

(2023. 5. 1. ~ 2024. 4. 30.)

문 정 회  
황 해 정

임 보안서기보(일반임기제)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  
(2023. 5. 1. ~ 2024. 4. 30.)

○ 전 입

- 2023. 4. 17.

행정안전부  
행정주사보 이 다 연

명 헌법재판소 전임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경리)

○ 전 보

- 2023. 4. 17.

행정관리국 총무과(경리)  
행정주사보 박 신 영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경리) 지원근무

재판관실  
법원서기관 임 영 선

명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법원사무관 정 재 욱

명 정정미 재판관실

재판관실  
행정주사 최 수 연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서무) 지원근무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서무)

재판관실  
행정주사 윤 성 진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 총무과(서무)  
행정주사 한 경 미

명 정정미 재판관실

재판관실  
사무주사보 배 인 경

명 헌법연구관실

헌법연구관실  
사무주사보 노 현 정

명 정정미 재판관실

재판관실  
관리서기보 강 석 봉

명 정정미 재판관실

○ 휴 직

- 2023. 4. 17.

행정관리국 총무과  
관리서기 김 지 수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육아휴직  
(2023. 4. 17. ~ 2023. 6. 16.)

- 2023. 4. 2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전문임기제 다급 박 수 희

명 육아휴직 연장  
(2023. 4. 23. ~ 2023. 7. 24.)

- 2023. 4. 24.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주사 윤 성 진

명 육아휴직  
(2023. 4. 24. ~ 2023. 6. 30.)

- 2023. 5. 1.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  
사서서기 송 혜 지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행정관리국 총무과  
보안서기보 박 진 화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육아휴직  
(2023. 5. 1. ~ 2024. 4. 3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유 정 민

명 육아휴직  
(2023. 5. 1. ~ 2023. 7. 16.)

○ 복 직

- 2023. 4. 14.



헌법연구원(전문임기제 나급) 박 혜 원  
명 육아휴직 복직

○ 퇴 직

- 2023. 4. 17.

도서심의관 자료조사과  
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 이 지 현  
의원면직

- 2023. 5. 4.

행정관리국 총무과  
보안서기보 이 민 규  
의원면직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23년 4월>

- 4. 3. 「대학생 헌법교육 심화과정 1기」 실시
  - 교육기간: 4. 3.(월) ~ 4. 6.(목)
  - 교육대상: 대학생 28명
  - 교육내용: 헌법 이론 및 헌법재판 실무 교육, 분임토의 등
- 4. 4. 변론준비기일
  -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 4. 7.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사건 재배당에 관한 의결안
- 4. 9.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출장자: 헌법재판소장, 헌법연구관 승이도, 조사관 주효진
  - 출장기간: 4. 9.(일) ~ 4. 13.(목)
  - 출장목적: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출장국가: 태국
- 4. 12. 「중·고등학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교육」 실시
  - 전남 순천 팔마고[4. 12.(수)]
  - 대전 대신고[4. 21.(금)]

- 충북 음성 매회고[4. 24.(월)]
- 4. 13. 「공익법무관 2차 직무연수」 실시
  - 교육기간: 4. 13.(목) ~ 4. 14.(금)
  - 교육대상: 공익법무관 24명
  - 교육내용: 헌법 재판 실무 및 헌법재판론 등
- 4. 15. 호주 대법원장 공식초청에 따른 호주 대법원 방문
  - 출장자: 재판관 이은애, 선임헌법연구관 김지현
  - 출장기간: 4. 15.(토) ~ 4. 20.(목)
  - 출장목적: 호주 대법원장 공식초청에 따른 호주 대법원 방문
  - 출장국가: 호주
- 4. 17.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지정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의결안
- 4. 18. 변론준비기일
  -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 4. 20.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장 공식초청에 따른 각 기관 방문
  - 출장자: 헌법재판소장, 선임헌법연구관 김현영, 선임비서관 김신일
  - 출장기간: 4. 20.(목) ~ 4. 26.(수)
  - 출장목적: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장 공식초청에 따른 각 기관 방문
  - 출장국가: 프랑스, 스페인
- 4. 24.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본 제2기)」 실시
  - 교육기간: 4. 24.(월) ~ 4. 26.(수)
  - 교육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54명
  - 교육내용: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 이해 등
- 4. 27.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연구관보 임용안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 뉴스레터 발송
  - 발송일자: 4. 27.(목)
  - 수록내용: 독일·오스트리아 등 세계헌법 판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기관

소개, 국외통신원 소식

- 4. 28. 2022 연차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4. 28.(금)
  - 수록내용: 2022년 수행한 연구·교육 등 제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보고
- 4. 1. ~ 4. 30.
  -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394,692  
(누적통계: 1,309,921건)



○ 심판사건통계표

심판사건총괄표

2023. 4. 30.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취 제	
	합 계	전달 (년) 미제	이달 (년) 접수	합 계	결 정									취 하		
					계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4 월 계	합 계	1,808	1,619	189	205	203								203 (203)	2	1,603
	위헌법률	56	56													56
	탄핵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6	5	1												6
	헌 법 소 원	계	1,745	1,557	188	205	203							203 (203)	2	1,540
	§68①	1,203	1,051	152	184	182							182 (182)	2	1,019	
	§68②	542	506	36	21	21							21 (21)		521	
금 년 누 계	합 계	2,658	1,672	986	1,055	1,042 <16>	34 <3>	9 <13>			16	99	74	810 (780)	13	1,603
	위헌법률	90	76	14	34	33 <10>	25 <1>	6 <9>				1	1		1	56
	탄핵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9	7	2	3	3					2			1		6
	헌 법 소 원	계	2,558	1,589	969	1,018	1,006 <6>	9 <2>	3 <4>			14	98	74	808 (780)	12
	§68①	1,823	1,020	803	804	796 <2>		1 <2>			14		74	707 (682)	8	1,019
	§68②	735	569	166	214	210 <4>	9 <2>	2 <2>				98		101 (98)	4	521

※ 주

-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3. 4. 30.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48,257	46,654	45,498 <808>	730 <504>	305 <223>	70 <52>	28 <29>	886	3,181	8,485	31,803 (29,517)	10	1,156	1,603	
위헌법률	1,103	1,047	919 <395>	342 <294>	98 <74>	18 <13>	7 <14>		376		78		128	56	
탄핵	4	3	3					1		1	1			1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24	118	99					22		29	48		19	6	
헌법소원	계	47,024	45,484	44,475 <413>	388 <210>	207 <149>	52 <39>	21 <15>	862	2,805	8,455	31,675 (29,517)	10	1,009	1,540
	§68①	37,400	36,381	35,521 <186>	124 <107>	88 <63>	20 <16>		862	5	8,455	25,959 (24,222)	8	860	1,019
	§68②	9,624	9,103	8,954 <227>	264 <103>	119 <86>	32 <23>	21 <15>		2,800		5,716 (5,295)	2	149	521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등록도서현황

(2023. 4. 30.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2년 말 누계		180,001	83,738	96,263	36,710	59,553
2023년	전월 말 누계	1,562	933	629	168	461
	4월	390	325	65	29	36
	소 계	1,952	1,258	694	197	497
총 계		181,953	84,996	96,957	36,907	60,050

○ 주요신착도서

- 2023년도 4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각주 민법 조문정리	이 상 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3
• 국제사법	안 춘 수	법 문 사	2023
• 물권법	김 준 호	법 문 사	2023
• 물권법	송 덕 수	박 영 사	2023
• 민법강의	김 준 호	법 문 사	2023
• 민법의 세계 이론 사례	양 형 우	정 독	2023
• 민법총칙	이 재 열	집 현 재	2023
• 민법총칙	김 준 호	법 문 사	2023
• 민사법특강	양 형 우	정 독 ( 마 인 드 탭 ( M i n d T a p ) )	2023
• 상법강의(13판)	송 옥 렬	홍 문 사	2023
• 상법강의요론	정 찬 형	박 영 사	2023
•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 강 현	박 영 사	2023
• 상법총칙 · 상행위법(6판)	김 정 호	법 문 사	2023
• 신민법강의	송 덕 수	박 영 사	2023
• 신민법입문	송 덕 수	박 영 사	2023
• 新民事訴訟法	이 시 윤	박 영 사	2023
• 新형사소송법	정웅석, 최창호, 김한균	박 영 사	2023
• 조세형사법	지 익 상	법 문 사	2023
• 채권법	김 준 호	법 문 사	2023
• 채권법각론	송 덕 수	박 영 사	2023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채무자 회생법	전 대 규	법 문 사	2023
• 친족상속법	조 은 희	정 독	2023
• 판례민법강의	양 형 우	정 독 [ 마 인 드 탭 ( M i n d T a p ) ]	2023
• 행정법	정 형 근	정 독	2023
• 형법각론	주 호 노	법 문 사	2023
• 회사법	김 정 호	법 문 사	2023
• 민법의 정리	이 광 섭	法 學 社	2022
• (3단 대조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원 기술 편 집 부	원 기 술	2022
• (리답) 상표법 판례	박 중 태 , 김 인 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2
• (알기쉬운) 개인 · 상속파산사건처리실무	유 재 복	법 률 정 보 센 터	2022
• (주요조문별 · 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 진 수	진 원 사	2022
•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I	신 관 악 형 사 법 학 회	글 샘	2022
•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II	신 관 악 형 사 법 학 회	글 샘	2022
•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김 동 근	법 률 출 판 사	2022
• (한글) 민사소송법전	박 효 근	법 학 사	2022
• 상속 파산 절차실무	법 률 연 구 회	법 률 정 보 센 터	2022
•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박 태 곤	법 문 북 스	2022
• 가사소송 2	김 동 근	진 원 사	2022
• 공범기록형 공범소송실무	정 형 근	정 독	2022
• 국제거래법	김 두 진	동 방 문 화 사	2022
• 국제도산법	이 연 주	박 영 사	2022
• 국제법	김 영 원	박 영 사	2022
• 국제사법	신 창 섭	세 창 출 판 사	2022
•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정 연 석	정 독	2022
• 물권법강의	박 동 진	법 문 사	2022
• 민법사례연습	가정준, 박희호, 신지혜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출 판 부 지 식 출 판 원 ( H U I N E )	2022
• 民法原論[제3판]	지 원 립	弘 文 社	2022
• 민사.형사 소송 119	한 병 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22
• 민사소송 가이드 · 매뉴얼	전 병 서	박 영 사	2022
•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법 문 북 스	2022
• 민사소송법	이 헌 목	홍 문 사	2022
• 민사소송법	손 한 기	홍 문 사	2022
• 민사소송법	범 경 철 , 광 승 구	정 독 [ 마 인 드 탭 ( M i n d T a p ) ]	2022
• 民事訴訟法	정동윤, 유병현, 김경옥	법 문 사	2022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판례분석	김 한 석	옥 선 원	2022
• 민사판결서 작성론 주문편	사 법 연 수 원	사 법 발 전 재 단	202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		한	병	호	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22
• 법률실무를 위한 형사소송실무		이	규	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22
• 사법과 세법(2판)		구	욱	서	유	로		2022
• 상법 기본강의		이	상	수	피	앤	씨	미
• 상법강의. 하		정	찬	형	박	영	사	
• 상법요해(7판)		김	선	광	정	독		2022
• 상법총칙·상행위법 I. 상법강의		이	기	수	,	최	병	규
• 상표법 해석(2판)		김	세	원		한	빛	지
• 새로운 형법각론		손	동	권	,	김	재	윤
• 新 법학개론		김	영	규	외	박	영	사
• 신탁법		오	영	결	홍	문	사	
• 저작권법(실무자를 위한)(7판)		임	원	선		한	국	저
• 조세형사법 해설		김	중	근		삼	일	인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박	형	준		한	빛	지
•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박	형	준		한	빛	지
•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박	형	준		한	빛	지
• 중대재해처벌법		정	진	우		중	양	경
• 채권자취소권법		조	해	섭		법	문	사
• 판례교재 형법각론		신	양	균	,	조	기	영
• 하도급법 연구		정	재	훈		이	화	여
• 한특허법 강해		한	승	준		한	빛	지
• 핵심 민사재판실무		김	기	정	피	데	스	
• 행정법 강론		김	남	철	박	영	사	
• 헌법개론		성	낙	인	법	문	사	
• 헌법과 지방자치권		김	해	원	한	티	재	
• 헌법소송법		오	호	택	동	방	문	화
• 헌법학		장	영	수	弘	文	社	
• 헌법학		한	수	응	법	문	사	
• 헌법학개론		박	승	호	박	영	사	
• 헌법학개론		고	문	현	박	영	사	
• 헌법환기		이	덕	연	신	조	사	
• 형법각론		윤	철	홍	법	원	사	
• 형법강의 총론		정	성	근	,	정	준	섭
• 형법총론		이	규	호	청	목	출	판
• 형사실무와 판례		이	성	철	,	이	정	택
• 회사법 II. 상법강의		이	기	수	,	최	병	규
• 회사법강의		정	찬	형		도	서	출

## 【일 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氣候変動への「適応」と法	釘 持 麻 衣	勁 草 書 房	2022
• 聖職と労働のあいだ	= 橋 哲	岩 波 書 店	2022
• 日本史のなかの裁判	川 嶋 四 郎	法 律 文 化 社	2022

## 【영 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erry Flew	Springer	2022

## - 2023년도 4월 교환도서

- 교환처: 일본 변호사연합회
- 교환일자: 2023. 4. 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NIBEN Frontier vol. 221	第二東京弁護士會	第二東京弁護士會	2023

- 교환처: 일본 긴기(近畿)대학교
- 교환일자: 2023. 4. 7.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近畿大學 法學 vol.70 no.2・3・4	近畿大學法學會	近畿大學法學會	2023

- 교환처: 일본 오사카(大阪)대학교
- 교환일자: 2023. 4. 21.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阪大法學 vol.72 no.6	大阪大學大學院法學 研 究 科	大阪大學大學院法學 研 究 科	2023

- 교환처: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교
- 교환일자: 2023. 4. 25.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早稻田法學會誌 vol.73 no.2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3
• 法研論集 vol.184	早稻田大學法學大學院 法 學 研 究 科	早稻田大學法學大學院 法 學 研 究 科	2022

## - 2023년도 4월 수증도서

- 기증자: 강제원 前 헌법연구원
- 기증일자: 2023. 4. 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쟁점법 실무연구	법 원 도 서 관	법 원 도 서 관	2023



- 기 증 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기증일자: 2023. 4. 5.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2022 Annual Report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2023

- 기 증 자: 몽골 국회 및 헌법재판소 실무단
- 기증일자: 2023. 4. 10.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Constitutional Law Institute :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23
• Towards Bette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Mongolia	Munkhsaikhan Odonkhuu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 Graduate School of Law Nagoya University	2014

- 기 증 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기증일자: 2023. 4. 17.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Liberal Democratic States in the 21st Century [Thai]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2023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Liberal Democratic States in the 21st Century [English]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2023
• Prominent Precedents o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2023
• Recent developments of Constitutional Justice in Asia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2023
• Recent developments of Constitutional Justice in Asia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2023

- 기 증 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기증일자: 2023. 4. 27.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Rapport D'activité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 Constitutionnel	2022
• Los Derechos Constitucionales : un paseo por el prado	Tribunal Constitucional	Tribunal Constitucional	2022

○ 헌법재판소장 동정

연 월 일	내 용
2023. 3. 28.(화)	이선애 재판관 퇴임식(헌법재판소 대강당)
2023. 3. 31.(금)	김형두 재판관 취임식(헌법재판소 대강당)
2023. 4. 6.(목)	김형두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대통령실)
2023. 4. 9.(일) ~ 4. 13.(목)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태국 헌법재판소) - 4. 12.(수) 재판소장 특별강연(탐마삿 대학교)
2023. 4. 14.(금)	이석태 재판관 퇴임식(헌법재판소 대강당)
2023. 4. 17.(월)	정정미 재판관 취임식(헌법재판소 대강당)
	정정미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대통령실)
2023. 4. 20.(목) ~ 4. 26.(수)	유럽 2개국 순방(프랑스·스페인) - 4. 21.(금) 프랑스 로랑 파비우스 헌법재판소장 회담(프랑스 헌법재판소) - 4. 24.(월) 스페인 칸디도 곤데렘베도 또우론 헌법재판소장 회담 (스페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특별강연(스페인 헌법재판소)
2023. 4. 25.(화)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정부서울청사 별관) ※ 사무처장 축사 대독



이선애 재판관 퇴임식(2023. 3. 28.)



김형두 재판관 취임식(2023. 3. 31.)



김형두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2023. 4. 6.)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2023. 4. 10.)





태국 탐마삿 대학교 특별강연(2023. 4. 12.)



이석태 재판관 퇴임식(2023. 4. 14.)



정정미 재판관 취임식(2023. 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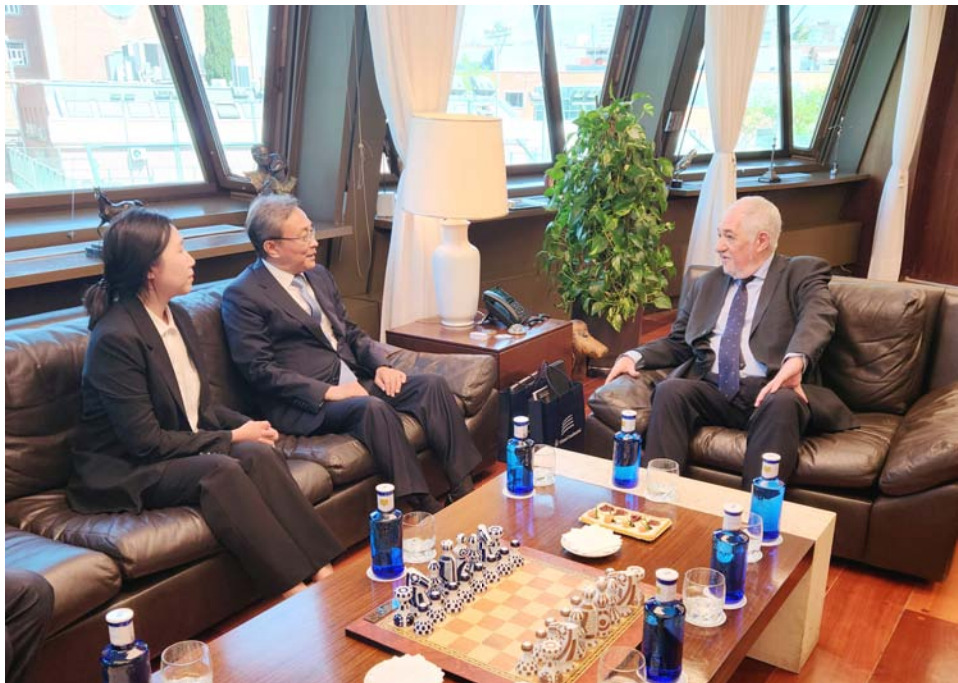


정정미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2023. 4. 17.)





프랑스 로랑 파비우스 헌법재판소장 회담(2023. 4. 21.)



스페인 간디도 폰데뵈도 또우론 헌법재판소장 회담(2023. 4. 24.)



스페인 헌법재판소 특별강연(2023. 4. 24.)





# 전자제출 안내

심판청구서 제출 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24시간 인터넷으로 사건 및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1.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전자헌법재판센터(<https://ecourt.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로그인창 > 회원가입 > 실명인증 > 회원정보 순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
-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 후(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번호, 소속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입력) 인증서를 등록

### 2. 전자제출 > 사건제출 또는 문건제출을 클릭 후 단계별로 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건유형 선택	당사자 등 입력	청구서 작성	청구서 확인	청구서 제출

### 3. 사건번호 확인

- 제출한 사건번호 확인은 전자제출 > 사건제출 > 사건제출함에서 당일 또는 익일 확인 가능

### 이런 점이 편리해요!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사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제출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